

과업지시서

「DDP 공간명칭체계 변경에 따른 간판형  
안내사인 개보수 사업」  
과업지시서

소 속      DDP운영본부 시설팀  
전 화      02-2153-0030

이메일      lcg279@seouldesign.or.kr

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www.seouldesign.or.kr](http://www.seouldesign.or.kr)

# 「DDP 공간명칭체계 변경에 따른 간판형 안내사인 개보수 사업」 과업지시서

## I 사업 안내

### 1. 사업 개요

- 가. 과업명: 「DDP 공간명칭체계 변경에 따른 간판형 안내사인 개보수 사업」
- 나. 과업목적 : DDP 공간명칭체계 변경으로 인한 기존 간판형 안내사인 개보수
- 공간 및 길 명칭이 달라 발생하는 DDP 방문 시민들의 혼선 최소화
  - 빛 바램, 풍화 등으로 인한 사인물 손상에 대한 유지관리
-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라. 과업의 범위 : 외부안내사인 및 DDP마켓 간판형 사인(사업 내용 참조)

항목	수량(개소)	비고
외부안내사인		
외부단지안내사인	6	대형 길안내
외부종합안내사인	15	소형 길안내
외부유도사인	10	길 유도
에스컬레이터 안내사인	2	
DDP마켓 관련 사인		
DDP마켓 미디어 사인	6	

## II 사업 내용

### 1. 과업 내용



- 가. DDP 공간명칭체계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기존(변경 전) 안내사인에 대해 현장 취재 및 조사를 실시한다.
- DDP 전 구역 현장감독관의 설명과 함께 순회

- 간판형 안내사인 수량 재확인 실시
  - 디자인 현황 파악
- 나. 기존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변경되는 부분 디자인 수정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일러스트 디자인 수정 작업
  - 폰트, 길 안내, 픽토그램 통일
  - 현장 상황 고려
- 다. 기존(변경 전) DDP 안내사인 간판 제거 용역작업, 신규(변경 후) DDP 안내사인 용역작업을 진행한다.
- 외부안내사인의 경우, 뒷면의 합체를 열어 안쪽 시트 및 접착제를 모두 제거한 다음 디자인 및 글자를 수정한 시트를 현상에 맞게 부착한다.
  - 그리고, 외부유도사인의 바깥면은 실크인쇄 본을 지워내 현상에 동일한 글씨와 크기로 다시 실크인쇄한다.(물리적 방법으로 지워내지 아니함.)
  - 간판형 사인의 경우, 현행 사용 중인 간판과 사이즈, 디자인이 동일하되, 협의를 통해 미적 향상된 디자인 간판일 경우 해당 디자인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한다.
  - 작업은 현상유지를 기초로 하며, 공간명칭체계 변경(안)을 기준으로 감독원의 협의 후 진행한다.
- ※ DDP 각종 행사 및 현장상황과 간섭이 없도록 진행한다.

## 2. 과업의 분류

### 가. 사인 분류

구분	작업	수량 및 규격(개소, mm)	현행
외부단지 안내사인	디자인 작업	6	
	지도 제거 및 재부착	1500 X 1545	
외부종합안 내사인	디자인 작업	15	
	지도 제거 및 재부착	750 X 875	
외부유도사 인	실크인쇄 제거	10	
	명칭수정해 재 실크인쇄	500 X 2300	

구분	작업	수량 및 규격(개소, mm)	현행
에스컬레이터 안내사인	명칭 수정 재부착	2	
		2400 X 155 X 300	
DDP마켓 미디어 사인	명칭 제거	6	
		760 X 390	

### Ⅲ 과업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 문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과 협의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내용과 "발주기관"가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가 공동 소

유한다. 단,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황 및 통계 등 제반자료)은 “재단”에 귀속하며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2.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제시해야 한다.
- 사업의 질적, 안정적 관리를 위한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와 투입인력 역할 및 추진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요원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운영상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으로 인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일용직 포함)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와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업무협약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계약상대자'가 '재단'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과업내용 변경 및 조성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3)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변경은 '발주기관'가 과업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코로나19 및 기타 특수재해 상황으로 인해 변동이 생길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 및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내용을 향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하자, 손실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물에 대한 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사용된 사진, 그림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 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수일 다음날로부터 2년6개월로 하고, 계약보증금률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준공검수일 다음날로부터 15년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보안

- ‘계약상대자’ 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 는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는 사전에 ‘발주기관’ 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7. 안전 등의 피해 방지

- ‘계약상대자’ 는 본 과업수행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사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최단 시일 내에 복구,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 8. 기기 및 자재

- 본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속품은 대상설비의 순정부품, 그 외 KS규격의 신품 지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 생산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성능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한다.
-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서 및 반출계획서(반출예정일, 반출방법 등 포함)를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에서 발생된 폐자재는 ‘발주기관’ 에게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9.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을 ‘발주기관’ 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 전·후 안전점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한다.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인원에 대하여 출입, 보안, 안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및 현장 작업원이 ‘발주기관’ 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DDP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 는 작업자가 안전장구(작업모, 안전화, 장갑 등 )를 꼭 갖추고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는 설명서, 안전가드라인 설치 및 장비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0.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 기계 및 기구는 소정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표시 및 기타 안전시설은 안전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허가된 장소 내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나 사고 발생 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화재비상 전화로 발주기관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붙임 1. 제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성과품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 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는 ‘발주기관’ 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 ‘ 계약상대자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지에 따라 책임당사자가 진다.

## IV 대가의 지급 및 청구

### 1. 대가지급

- 대가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소요 비용 일체로 한다.

### 2. 사업집행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재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 ·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재단이 제시하는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품 제출 시, 지출관련 내역 및 증빙서류가 첨부된 원가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대행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재단에게 납부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V 계약의 해지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조건에 미달 또는 위배한 경우
  -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 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 해지 조치가 진행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계약상대방에 요구할 수 있다. 끝.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